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홍국표 의원입니다.
- ☐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본 의원은 골목상권의 체계적 발굴과 조직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민경제 보호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영세 상권을 발굴·육성하여, 균형 있는 상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소상공인 지원 기반 확충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조직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¹⁾ 또한 19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와 의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소관 부서의 개정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본 의원이 직접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본 사업은 서울시와 대행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도 자치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는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임.

□ 또한 본 개정안은 기존의 서울시가 진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사업의 내용을 ‘상권 구획 설정’으로 한정하였으며, 지원 의무가 아닌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상권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제12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신설된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상인조직에 한정된 지원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아직 상인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잠재적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의 본문부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골목상권의 발굴과 육성은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